

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공개모집 공고

2020년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0년 2월 21일
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

1 개요

-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, 불기소 처분, 구속취소,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,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 8월부터 ‘검찰시민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검찰시민위원의 임기는 최장 2년이고, 매월 1회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,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.
- 2020. 3. 기존 검찰시민위원들의 임기가 일부 만료함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 모집 인원 및 일정

- 모집 인원: 00명
- 모집 공고 기간: 2020. 2. 21.(금) ~ 3. 6.(금)
-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, 최종 선정자에 대해서는 개별 유선 통보

3 지원 자격

- 지원 자격: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만 19세 이상(2001. 12. 31. 이전 출생자)의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 중 매월 1회 회의 참석이 가능한 사람
 - ※ 현재 시민위원을 4개 조로 나누어 매주 금요일 오후에 회의 개최(조별 월 1회 회의 개최)
- 결격 사유: 「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」 제17조,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¹⁾

4 지원 방법 (제출서류)

- 2020. 3. 6.(금)까지 서울중앙지검에 ①이메일 또는 ②등기우편 송부
 - ※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(연락처: ☎ 02-530-4340), 우편은 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
 - 우편 주소: (06594)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30호 공공수사제1부
 - ※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'검찰시민위원회 지원서 재중' 기재
 - 이메일 주소: 710ms101@spo.go.kr
 -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분의 지원서는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.
- 제출서류
 - 지원서 【붙임1 양식】 ※서명부분은 반드시 자필기재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【붙임2 양식】 ※서명부분은 반드시 자필기재
 -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사본
 - 직업 및 소속(직장, 학교 등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1) 제17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제18조(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대통령
2. 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
3. 입법부·사법부·행정부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·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
4. 법관·검사
5. 변호사·법무사
6. 법원·경찰 공무원
7. 경찰·교정·보호관찰 공무원
8. 군인·군무원·소방공무원 또는 「예비군법」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